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위원회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00.00. ~ 00.00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2024년 3월 31일까지를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대비표

[별표 4]

조직	정원	(현행) 평가기간	(개정안) 평가기간
1.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	4명 (4급 1명, 5급 1명, 6급 1명, 7급 1명)	<u>2024년 3월 31일</u> 까지	<u>2026년 3월 31일</u> 까지
.	.	.	.